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김태현
대한민국 06626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43 신덕빌딩
9층

발송일 (일/월/년) 2018년 10월 12일 (12.10.2018)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OEC11261PCT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7966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7월 13일 (13.07.2018)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8월 09일 (09.08.2017)

국제특허분류(IPC)
A47L 5/24(2006.01)i, A47L 9/32(2006.01)i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10월 11일 (11.10.2018)

심사관
이창호
전화번호 +82-42-481-8288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15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KR 10-2007-0037179 A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2007.04.04

1. 신규성 및 진보성

1.1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2항

청구항 제1항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먼지 및 이물질이 포함된 공기가 흡입되는 흡입구체(6)를 구비하는 연장관(7); 흡입모터를 포함하는 손잡이부(5); 및 손잡이부(5)와 연장관(7) 사이에 결합되는 굴절 연장관을 포함하는 진공 청소기(단락 [0017], [0020]-[0021], [0031]; 청구항 1; 및 도면 1, 6 참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 제1항은 헨디-스틱형 진공청소기가 제2부분의 내측에 배치되어 제3부분을 선택적으로 록킹 및 록킹 해제함에 따라 제1 및 제2부분이 상호 회전할 수 있는 회전 모드와 회전 불가능한 고정 모드를 설정하는 모드설정유닛을 더 포함하는 점에서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차이는 인용문헌 D1의 제1연장관(10)에 대해 제2연장관(20)의 회전이 선택적으로 가능하도록 제2연장관(20)에 결쇠(40)를 설치함으로써, 자유롭게 굴절 가능한 연장관을 제공하는 것(단락 [0049]; 및 도면 4-5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2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의 진공 청소기의 손잡이부(5) 측에 결합되는 제1연장관(10); 및 진공 청소기의 연장관(7) 측에 결합되고 제1연장관(10)에 대해 회전이 선택적으로 가능한 제2연장관(20)(단락 [0032]-[0033], [0049]; 및 도면 1, 4-5 참조)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제3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모드설정유닛이 제1연결부재를 록킹 및 록킹 해제하기 위한 록킹 위치 및 록킹 해제 위치 중 어느 하나로 이동하는 록킹돌기를 포함하고, 제1연결부재가 록킹 위치에서 록킹돌기에 간섭되는 걸림돌기를 포함하는 것은 인용문헌 D1의 제1연장관(10)의 수납홈(12)에 수납되는 걸쇠(40)의 단부측에 형성되는 걸림 돌기(42); 및 걸림 돌기(42)가 걸리는 걸림턱(12a)(단락 [0036]; 및 도면 3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4항 및 제5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모드설정유닛이 제2부분의 외측으로 일부가 돌출된 버튼; 제2부분의 내측에 고정되는 홀더; 및 일측이 버튼에 결합되고 타측이 홀더에 이동 가능하도록 연결되며, 록킹돌기가 일체로 형성된 래치를 포함하고, 홀더의 내측에 래치를 탄력적으로 지지하는 탄성부재가 배치된 것은 인용문헌 D1의 체결홈(26)에 제공된 탄성체(44)에 의해 일단이 탄성적으로 지지되고, 단부측에 걸림 돌기(42)가 제공되어, 수납홈(12)의 걸림턱(12a)에 걸리는 걸쇠(40)(단락 [0036]; 및 도면 3 참조)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6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록킹돌기 및 걸림돌기가 각각 고정모드에서 서로 마주하는 방향으로 배치된 일측면과, 일측면에 반대 측에 배치된 타측면을 가지며, 록킹돌기의 타측면 및 걸림돌기의 타측면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경사지게 형성된 것은 인용문헌 D1의 제1연장관(10)의 수납홈(12)에 수납되는 걸쇠(40)의 단부측에 형성되는 걸림 돌기(42); 및 걸림 돌기(42)가 걸리는 걸림턱(12a)(단락 [0036]; 및 도면 3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7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제2부분에 손잡이가 형성되고 손잡이와 인접한 위치에 버튼이 배치된 것은 인용문헌 D1의 손잡이부(5); 및 제1연장관(10)의 수납홈(12)에 수납되도록 일단부측 외주면에 제공되는 걸쇠(40)(단락 [0017], [0033]; 및 도면 1-2 참조)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8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제2연결부재에 제1연결부재의 후방이 선회 가능하게 수용되는 수용공간이 형성되고, 록킹돌기가 제1연결부재의 걸림돌기를 간섭할 수 있도록 수용공간 내로 인입된 것은 인용문헌 D1의 제1연장관(10)의 외주면에 형성되는 안착홈(16); 및 수납홈(12)에 수납되는 걸쇠(40)(단락 [0036]-[0037]; 및 도면 4-5 참조)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9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고정 모드에서 제1부분의 길이방향 축과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제2부분의 길이방향 축이 평행을 이루고, 회전 모드에서 제1부분의 길이방향 축 및 제2부분의 길이방향 축이 둔각을 형성하는 것은 인용문헌 D1의 제1연장관(10)에 대해 제2연장관(20)의 회전이 선택적으로 가능하도록 제2연장관(20)에 걸쇠(40)를 설치함으로써, 자유롭게 굴절 가능한 연장관을 제공하는 것(단락 [0049]; 및 도면 4-5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10항 및 제11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의 제1연장관(10)과 제2연장관(20)의 내측에 굴절 호스(30)가 제공되는 것(단락 [0035]; 및 도면 5 참조)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청구항 제12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제1부분이 제2부분에 대하여 회전 가능한 각도가 예각 또는 둔각인 것은 인용문헌 D1의 제1연장관(10)에 대해 제2연장관(20)의 회전이 선택적으로 가능하도록 제2연장관(20)에 걸쇠(40)를 설치함으로써, 자유롭게 굴절 가능한 연장관을 제공하는 것(단락 [0049]; 및 도면 4-5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2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에 의해 자명하므로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2 청구항 제13항 내지 제15항

청구항 제13항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먼지 및 이물질이 포함된 공기가 흡입되는 흡입구체(6)를 구비하는 연장관(7); 흡입모터를 포함하고 진공 청소기의 연장관(7) 측에 결합되는 제2연장관(20)이 회전하도록 연결되는 제1연장관(10)과 제1연장관(10)과 제2연장관(20)의 내측에는 굴절 호스(30)가 제공되는 손잡이부(5); 및 손잡이부(5)와 연장관(7) 사이에 결합되는 굴절 연장관을 포함하는 진공 청소기(단락 [0017], [0020]-[0021], [0031]-[0033], [0035], [0049]; 청구항 1; 및 도면 1, 4-6 참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 제13항은 핸디-스틱형 진공청소기가 제1부분을 선택적으로 록킹 및 록킹 해제하여 제1부분이 회전하는 회전모드와 비회전하는 고정모드로 설정하는 모드설정유닛을 더 포함하는 점에서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차이는 인용문헌 D1의 제1연장관(10)에 대해 제2연장관(20)의 회전이 선택적으로 가능하도록 제2연장관(20)에 걸쇠(40)를 설치함으로써, 자유롭게 굴절 가능한 연장관을 제공하는 것(단락 [0049]; 및 도면 4-5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14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모드설정유닛이 제2부분 내측에 이동 가능한 상태로 탄력적으로 배치되고, 일부가 제2부분 외측으로 돌출되며, 고정모드에서 제1부분의 일부를 간섭하는 것은 인용문헌 D1의 체결홈(26)에 제공된 탄성체(44)에 의해 일단이 탄성적으로 지지되고, 단부측에 걸림 돌기(42)가 제공되어, 수납홈(12)의 걸림턱(12a)에 걸리는 걸쇠(40)(단락 [0036]; 및 도면 3 참조)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15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인 모드설정유닛이 제1부분의 걸림돌기를 록킹 및 록킹 해제하는 록킹돌기를 구비하며, 록킹돌기 및 걸림돌기가 각각 고정모드에서 서로 마주하는 방향으로 배치된 일측면과, 일측면에 반대 측에 경사지게 배치된 타측면을 가지며, 록킹돌기와 걸림돌기의 타측면이 서로 마주하는 방향으로 경사진 것은 인용문헌 D1의 제1연장관(10)의 수납홈(12)에 수납되는 걸쇠(40)의 단부측에 형성되는 걸림 돌기(42); 및 걸림 돌기(42)가 걸리는 걸림턱(12a)(단락 [0036]; 및 도면 3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3항 내지 제15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에 의해 자명하므로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5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4)에 따른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